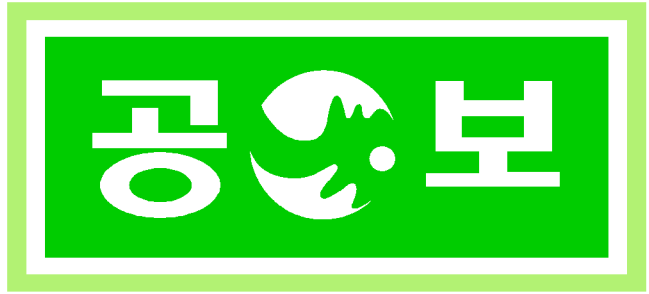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1066 호 2017. 5. 12. (금)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589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590호[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7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종이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 공문을 수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행정정보→알림마당→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589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강동권 개발을 포함한 관광·해양개발 분야 총괄 부서 신설
- 나.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 신설

2. 주요내용

- 가. 과 신설 : 관광해양개발과
- 나. 명칭변경 : 도시행정과 → 도시과
- 다. 담당신설 : 관광개발, 지역공동체, 출산장려, 재난관리

3.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112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3,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서관과”를 “관광해양개발과, 도서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평생교육”을 “지역공동체, 평생교육”으로 하며,

제5조제2항제4호 중 “문화관광”을 “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부터 제7호 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

제6조제2항제2호 중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복지, 출산장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행정과”를 “도시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복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복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행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 국에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 과, <u>도서관과</u>, 세무과, 민원지적과를 둔 다.</p> <p>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p> <p>1. (생 략)</p> <p>2. 자치행정, 주민자치, 교육지원, <u>평생 교육</u>, 동행정업무 총괄, 창의놀이터 운영 등에 관한 사무</p> <p>3. (생 략)</p> <p>4. <u>문화관광</u>, 체육, 체육시설(운동장, 국 민체육센터, 오토벨리복지센터 포함), 예술공연 등에 관한 사무</p> <p><신 설></p> <p>5. ~ 7. (생 략)</p>	<p>제5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 ----- ----- <u>관광해양개발과</u>, 도서관과 -----.</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지역공 동체</u>, 평생교육----- -----</p> <p>3. (현행과 같음)</p> <p>4. <u>문화</u>----- ----- -----</p> <p>5. <u>관광정책, 관광개발, 해양개발 등에 관한 사무</u></p> <p>6. ~ 8. (현행 제5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p>
<p>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생 략)</p> <p>② 복지경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p> <p>1. (생 략)</p> <p>2. 노인복지, 여성아동청소년, 보육, <u>장애인복지</u> 등에 관한 사무</p> <p>3. ~ 10. (생 략)</p>	<p>제6조(복지경제국에 두는 과)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장애 인복지, 출산장려</u> -----</p> <p>3. ~ 10. (현행과 같음)</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건설도시 국에는 건설과, 안전정보과, <u>도시행정과</u>,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를 둔다.</p> <p>② (생 략)</p>	<p>제7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① ----- ----- ----- <u>도시과</u>----- -----.</p> <p>② (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17-590호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2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개정이유

- 가. 2017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기준에 따른 인력 증원
- 나.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 가. 정원 증원 : 4명(562명 → 566명)
- 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 **【별표 3】**
 - 총 계 : 562명 → 566명(증 4명)
 - 일반직 계 : 560명 → 564명(증 4명)
 - 5급 : 증 1명(32명 → 33명), 6급 이하 : 증 3명(523명 → 526명)

3. 근거법규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6월 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3,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62명”을 “566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49명”을 “553명”으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566	-			
정 무 직 계	1	-			
구청장	1	1	-	-	-
일 반 직 계	564	-			
3급	1	1	-	-	-
4급	4	3	-	1	-
5급	33	20	2	3	8
6급 이하 계	526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원의 총수) 울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은 <u>562명</u>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549명</u></p> <p>2. (생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566명</u>이며, ----- -----.</p> <p>1. ----- : <u>553명</u></p> <p>2. (현행과 같음)</p>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회 직 기 관</th> <th>숙 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562</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60</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td> <td>1</td> <td></td> </tr> <tr> <td>5급</td> <td><u>32</u></td> <td><u>19</u></td> <td>2</td> <td>3</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523</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회 직 기 관	숙 관	동	총 계	<u>562</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60</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2</u>	<u>19</u>	2	3	8		6급이하 계	<u>523</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th> <th>총 계</th> <th>본 청</th> <th>의 회 사무과</th> <th>회 직 기 관</th> <th>숙 관</th> <th>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u>56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구청장</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u>564</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4</td> <td>3</td> <td></td> <td>1</td> <td></td> <td></td> </tr> <tr> <td>5급</td> <td><u>33</u></td> <td><u>20</u></td> <td>2</td> <td>3</td> <td>8</td> <td></td> </tr> <tr> <td>6급이하 계</td> <td><u>526</u></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급상당 이하 계</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회 직 기 관	숙 관	동	총 계	<u>566</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64</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3</u>	<u>20</u>	2	3	8		6급이하 계	<u>526</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회 직 기 관	숙 관	동																																																																																																																																																					
총 계	<u>562</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60</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2</u>	<u>19</u>	2	3	8																																																																																																																																																						
6급이하 계	<u>523</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과	회 직 기 관	숙 관	동																																																																																																																																																					
총 계	<u>566</u>					-																																																																																																																																																					
정무직 계	1					-																																																																																																																																																					
구청장	1	1																																																																																																																																																									
일반직 계	<u>564</u>					-																																																																																																																																																					
3급	1	1																																																																																																																																																									
4급	4	3		1																																																																																																																																																							
5급	<u>33</u>	<u>20</u>	2	3	8																																																																																																																																																						
6급이하 계	<u>526</u>					-																																																																																																																																																					
별정직 계	1					-																																																																																																																																																					
6급상당 이하 계	1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